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

오 상 봉*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 (중략) …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최저임금법 제정 이유에 적시되어 있다. 이 법에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 규정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는데, 그 과정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참조한다. 하나는 전년도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설문조사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전년도에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분석한 보고서이며, 마지막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과 함께 당해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본고는 임금근로자 개개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의 세 가지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family)의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I. 분석 자료

본고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 세대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15차(2012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기술통계량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두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만 언급한다면, 하나는 한국노동패널의 취업자 비율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낮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높고 임시직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상용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oh@kli.re.kr).

〈표 1〉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과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비교

(단위: 천 명, %)

		한국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경 활	전 체	42,590 (100.0)	41,582 (100.0)
	취 업	24,226 (56.9)	24,681 (59.4)
	미취업	18,365 (43.1)	16,901 (40.6)
취 업	임 금	17,578 (72.6)	17,712 (71.8)
	비임금	6,648 (27.4)	6,969 (28.2)
임 금	상 용	12,974 (73.8)	11,097 (62.7)
	임 시	2,994 (17.0)	4,988 (28.2)
	일 용	1,610 (9.2)	1,627 (9.2)
비임금	자 영	5,469 (82.3)	5,718 (82.2)
	무 금	1,178 (17.7)	1,251 (17.8)

직과 임시직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은 설문문항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동패널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한계점은 관측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공식통계로 이용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3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비해, 한국노동패널은 5,000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노동패널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세대의 실태를 세밀히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²⁾

II. 근로자 개인의 특성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최저임금의 두배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수가 적지 않다. 한국노동패널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7.91%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³⁾ 4.51%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구성원 모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위에서 언급한 한국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차이는 최저임금 통계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미준수율이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할 경우 7.91%인데 반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9.6%이다.

〈표 2〉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근로자 임금)/(최저임금)	근로자 수	비율
0~ 70%	402,038	2.29
70~ 90%	708,007	4.03
90~100%	279,810	1.59
100~110%	792,372	4.51
110~130%	1,653,717	9.41
130~200%	4,430,690	25.22
200% 이상	9,304,380	52.95
전 체	17,571,014	100.00

주: 무응답이 6,759명.

수준(100~1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9.41%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110~130%의 임금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이든 한국노동패널이든 최저임금 통계를 산출할 때 부업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율 및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더 높아질 것이다.⁴⁾

<표 3>에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월 임금이 나와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이므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미만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중간값과 평균값 모두 4,580원보다 낮다.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은 중간값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⁵⁾,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이나 임금이 우로 치우쳐 있다(positively skewed)는 것을 반영한다. 한 가지 특징은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그대로 월 임금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 차이의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근로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금수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인

4)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부업에 투입하는 시간에 대한 조사는 하지만 부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은 현재 부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부업을 반영한 최저임금 미준수율 및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없다.
5) 최저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현저히 낮는데, 이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다수 포함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받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70%를 넘는다.⁶⁾

〈표 3〉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월 임금

(근로자 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¹⁾		월 임금(만 원)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0~ 70% ²⁾	2.459 (2.732)	1.878 (2.270)	50.0 (50.0)	46.7 (55.5)
70~ 90%	3.825	3.736	80.0	79.7
90~ 100%	4.303	4.306	94.0	93.4
100~ 110%	4.781	4.741	100.0	95.2
110~ 130%	5.623	5.528	100.0	110.3
130~ 200%	7.511	7.512	150.0	152.1
200% 이상	14.344	16.710	280.0	309.5

주: 1) 시간당 임금 계산에 이용된 월 근로소득이 만원 단위로 조사되어서 시간당 임금을 원 단위로 환산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천 원 단위로 표시하였음.

2) () 안에 있는 숫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

〈표 4〉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근로형태 분포

(단위 : %)

(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0~ 70%	23.76	76.24	100.00
70~ 90%	15.69	84.31	100.00
90~ 100%	26.23	73.77	100.00
100~ 110%	31.74	68.26	100.00
110~ 130%	35.48	64.52	100.00
130~ 200%	56.68	43.32	100.00
200% 이상	80.59	19.23	100.00

주: 최저임금의 200% 이상인 근로자 중 0.18%가 응답을 하지 않음.

〈표 5〉에서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의 직업을 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의 직업이 단순노무나 서비스, 판매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전문가 및 관련업무와 사무업무를 보고 있다.

6) 본고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KLIPS의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한 자기 선언적 분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 부가조사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과는 다르다.

〈표 5〉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직업 분포(6차 표준직업분류 기준)

(단위 : %)

	0~70%	70~90%	90~100%	100~110%	110~130%	130~200%	200% 이상
관리자	-	-	-	-	0.05	-	2.34
전문가 및 관련업무	8.69	5.38	5.44	10.62	11.20	21.02	33.93
사무	9.77	1.20	7.96	4.66	10.77	16.55	24.59
서비스	14.25	21.22	23.00	21.88	19.58	8.04	4.36
판매	6.40	11.30	17.89	17.22	18.78	12.01	5.27
농림어업숙련	-	0.35	0.29	1.07	1.48	0.64	0.22
기능원 및 관련기능	10.23	9.23	9.57	8.99	5.78	11.54	12.6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7.47	8.68	4.57	7.27	9.54	14.72	13.01
단순노무	43.19	42.65	31.28	28.29	22.82	15.47	3.67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종사 업종 분포(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단위 : %)

	0~70%	70~90%	90~100%	100~110%	110~130%	130~200%	200% 이상
농림어업	6.33	3.30	1.13	1.44	2.11	0.49	0.55
광업	-	-	-	-	-	-	0.01
제조업	17.88	15.61	13.64	15.92	17.21	23.09	23.8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39	0.40	-	0.13	-	0.12	0.9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	-	-	0.14	0.23	0.60
건설업	4.14	0.57	2.45	1.60	2.94	9.71	10.34
도매 및 소매업	9.41	12.83	20.54	15.31	19.85	14.14	7.45
운수업	5.47	3.76	3.53	2.85	2.78	4.26	4.46
숙박 및 음식점업	8.89	15.56	14.48	23.15	15.41	6.22	1.5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7	1.40	-	1.27	1.05	3.02	5.33
금융 및 보험업	2.57	-	1.33	-	2.44	1.63	5.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83	9.19	6.78	4.63	5.67	2.41	1.8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0.35	-	1.40	1.07	2.56	5.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5.93	7.12	8.29	5.98	3.16	4.83	1.5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0	4.64	1.74	2.67	2.65	2.87	7.65
교육서비스업	7.70	2.52	5.17	7.15	6.42	6.42	11.7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51	7.32	7.04	3.94	10.72	11.77	5.9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1.05	3.42	3.09	2.95	1.20	1.37	0.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8.33	10.52	10.80	8.65	4.36	4.15	3.5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1.11	1.48	-	0.95	0.82	0.64	0.06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0.05	0.11

<표 6>은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의 종사 업종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임금수준이 높아 질수록 제조업 종사 비율이 높아지며, 제조업 임금수준은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Ⅲ. 세대별 특성⁷⁾

다음에서 다룰 세대(family)는 가구(household)와 다르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만 구분하고 있지 가구 내에 세대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를 세대로 쪼개야만 한다. 여기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가구주의 자녀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 그들을 독립된 세대로 구분하였다. 간혹 가구주의 자녀의 배우자가 자녀(가구주의 자녀의 자녀)만 데리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그들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가 세대주가 된다. 결혼한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결혼한 가구주의 자녀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였다.⁸⁾ 추가로 세대주의 부모, 조부모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가 아닌 세대원(세대주나 세대주가 아님) 중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세대원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다.⁹⁾ 기타 친인척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동거인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세대를 기준으로 임금근로 세대주 및 배우자의 세대주 임금 기준 분포는 <표 7>~<표 9>에 나와 있다. <표 7>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주의 임금수준별로 배우자 유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인 상태에 있다. 이는 세대주의 최저임금보다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표 7>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

7) 한 세대에는 세대주와 배우자, 세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누구의 가중치 또는 어떤 조합의 가중치를 적용할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세대별 분석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8) 이렇게 삭제되는 관측치는 전체의 1% 미만이다.

9)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가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만 25세 이상인 다른 세대원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 다른 세대원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봤다.

〈표 7〉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 세대주와 배우자의 분포(세대주 임금 기준)

(단위 : %)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중 비중			
	유배우자	무배우자	무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	무급종사
0~ 70%	42.86	57.14	60.00	31.11	8.89	0.00
70~ 90%	38.71	61.29	68.75	31.25	0.00	0.00
90~100%	37.78	62.22	70.59	23.53	0.00	5.88
100~110%	31.19	68.81	67.65	23.53	8.82	0.00
110~130%	32.60	67.40	41.89	40.54	16.22	1.35
130~200%	42.61	57.39	47.95	42.27	9.46	0.32
200% 이상	57.39	42.61	52.07	39.79	7.89	0.24

은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표 8〉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세대주 소득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세대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만 25세 이상인 세대원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것은 세대주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단독세대의 비중이 낮아지고 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둘 이상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는 다른 세대원의 소득으로 자신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가능성이 낮지만,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는

〈표 8〉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임금근로 세대주와 배우자의 분포(세대주 임금 기준)

(단위 : %)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중 비중		
	유배우자	무배우자	비단독세대		단독세대
			단수소득	다수소득	
0~ 70%	42.86	57.14	6.67	21.67	71.67
70~ 90%	38.71	61.29	7.89	27.63	64.47
90~100%	37.78	62.22	3.57	28.57	67.86
100~110%	31.19	68.81	4.00	24.00	72.00
110~130%	32.60	67.40	12.42	30.72	56.86
130~200%	42.61	57.39	12.18	35.13	52.69
200% 이상	57.39	42.61	15.90	53.60	30.50

10) 다른 세대원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는 있으나 그 비중이나 금액이 크지 않다.

다른 세대원의 소득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 9>는 <표 7>에서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따로 뽑아서 세대주와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관측치가 많지 않아서 일부 현실성 없는 값들이 표에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 세대의 약 50%에서 배우자도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지만, 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25% 이하에서만 배우자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다.

<표 9>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세대주 임금 기준)

(단위 : %)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0~ 70%	70~ 90%	90~ 100%	100~ 110%	110~ 130%	130~ 200%	200% 이상	전 체
0~ 70%	0.00	7.14	0.00	21.43	28.57	21.43	21.43	100.00
70~ 90%	6.67	20.00	13.33	0.00	40.00	13.33	6.67	100.00
90~100%	0.00	0.00	0.00	0.00	50.00	25.00	25.00	100.00
100~110%	0.00	12.50	12.50	12.50	25.00	25.00	12.50	100.00
110~130%	3.33	20.00	3.33	10.00	26.67	20.00	16.67	100.00
130~200%	1.49	11.94	2.24	14.18	26.87	29.85	13.43	100.00
200% 이상	1.60	4.01	2.00	6.01	14.03	26.25	46.09	100.00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배우자 임금 기준 분포는 <표 10>과 <표 11>에 나와 있다. <표 10>은 배우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질수록 세대주가 무직이거나 자영업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고 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일 때 세대주의 20% 정도가 무직이고 30%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0%만이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 자영업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때 절반 가까운 세대에서 세대주의 소득으로 세대의 전체 소득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배우자 임금 기준)

(단위 : %)

(배우자 임금)/ (최저임금)	0~ 70%	70~ 90%	90~ 100%	100~ 110%	110~ 130%	130~ 200%	200% 이상
무직	32.26	27.47	15.63	22.86	11.22	15.59	19.43
임금근로자	38.71	51.65	53.13	53.33	62.44	62.71	67.10
비임금	자영업	29.03	20.88	31.25	22.86	26.34	13.21
	무급종사				0.95		0.26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11>은 <표 10>에서 세대주가 임금근로자일 때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세대주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할 경우 대체로 배우자의 낮은 임금이 세대주의 임금으로 보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3~2배 수준이거나 2배 이상일 때 세대주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일 확률이 약 70%와 90%인데 비해 최저임금의 1.1배 미만일 때 세대주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일 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인 세대의 소득이 세대주의 임금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임금근로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배우자 임금 기준)

(단위 : %)

(배우자 임금)/ (최저임금)	0~ 70%	70~ 90%	90~ 100%	100~ 110%	110~ 130%	130~ 200%	200% 이상
0~ 70%	0.00	2.13	0.00	5.36	3.13	1.62	1.16
70~ 90%	8.33	6.38	11.76	0.00	4.69	1.08	0.39
90~ 100%	0.00	0.00	0.00	0.00	1.56	0.54	0.39
100~ 110%	0.00	2.13	5.88	1.79	1.56	1.08	0.39
110~ 130%	8.33	12.77	5.88	5.36	6.25	3.24	1.93
130~ 200%	16.67	34.04	17.65	33.93	28.13	21.62	6.95
200% 이상	66.67	42.55	58.82	53.57	54.69	70.81	88.80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이제부터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서의 경제적 상황에는 오로지 임금소득만 고려되지 자영업 소득이나 이전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2> 배우자가 있을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총합	세대주	세대총합	
0~ 70%	1.924	5.085	60	120	2.49
70~ 90%	3.664	5.626	97	135	2.33
90~ 100%	4.375	6.383	109	141	2.69
100~ 110%	4.726	6.450	106	145	2.68
110~ 130%	5.502	8.763	117	178	2.57
130~ 200%	7.681	11.440	170	241	3.08
200% 이상	17.750	22.493	338	421	3.44

주 : 배우자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

<표 12>는 배우자가 있을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의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때 세대 전체의 임금이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 임금 소득으로 약 2.5명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대의 임금소득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표 13>은 세대주가 임금소득자이지만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세대주와 세대 전체의 임금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원의 임금소득이 거의 없어서 세대 전체의 소득이 세대주의 소득과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 세대원의 수는 배우자의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직이고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을 때, 세대 전체의 소득은 12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이것으로 약 2.5명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세대의 경제상황은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세대와 상당히 다르다.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도 월 세대 임금소득은 240

<표 13> 배우자가 무직일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총합	세대주	세대총합	
0~ 70%	2.190	2.467	67	72	2.41
70~ 90%	3.610	3.610	92	92	2.21
90~100%	4.385	4.385	112	112	2.75
100~110%	4.713	4.910	105	111	2.61
110~130%	5.464	5.464	113	113	2.29
130~200%	7.714	8.218	173	182	2.94
200% 이상	18.200	18.362	351	354	3.40

<표 14>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일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총합	세대주	세대총합	
0~ 70%	1.411	10.134	46	212	2.64
70~ 90%	3.785	10.063	106	228	2.60
90~100%	4.347	12.377	101	230	2.50
100~110%	4.763	10.875	111	243	2.88
110~130%	5.541	12.172	120	244	2.87
130~200%	7.644	15.095	167	309	3.24
200% 이상	17.161	27.900	322	509	3.49

만 원에 이른다. 이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세대 전체 임금소득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표 15>는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의 임금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관측치가 많지 않을 때 세대 전체의 소득이 세대주의 소득에 비해 높은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대 전체의 소득은 세대주의 소득에 비례한다. 특징적인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세대원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주의 임금소득 구간별로 보면, 세대 전체의 소득이 <표 14>에 있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소득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낮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때 세대 전체의 소득은 130~150만 원 정도이며, 이것으로 3명 이상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5>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존재할 때 세대주의 임금 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총합	세대주	세대총합	
0~ 70%	2.194	5.934	59	131	3.53
70~ 90%	3.719	5.496	79	112	3.41
90~100%	4.316	8.015	88	158	3.00
100~110%	4.705	7.011	96	134	3.33
110~130%	5.505	9.538	111	189	3.09
130~200%	7.613	11.037	155	220	2.92
200% 이상	16.976	21.919	317	408	3.26

<표 16>은 단독세대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경우 세대의 월 소득은 약 100만 원 이하이다.

<표 16> 단독세대일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0~ 70%	2.326	51
70~ 90%	3.782	74
90~100%	4.343	105
100~110%	4.736	95
110~130%	5.474	109
130~200%	7.563	153
200% 이상	13.926	253

<표 17>은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때 세대 전체의 임금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이며, 이것으로 3명 정도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17〉 배우자의 임금 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배우자 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배우자	세대총합	배우자	세대총합	
0~ 70%	2.149	6.992	44	135	2.48
70~ 90%	3.754	9.597	74	195	3.00
90~100%	4.352	11.105	84	214	3.03
100~110%	4.726	11.436	92	226	3.06
110~130%	5.525	12.920	103	248	3.22
130~200%	7.298	16.359	137	309	3.41
200% 이상	15.450	27.149	273	491	3.38

IV. 결 론

본고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세대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독세대의 경우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개개인의 월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단독세대의 월 소득은 50~100만 원이다. 이러한 임금수준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단독 미혼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독세대가 아닌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단독세대에 비해서 나은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만약 단독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단독세대가 아닌 세대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도 세대 총 임금소득이 200만 원이 넘고 세대원의 수가 약 2.5명이어서 단독세대보다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세대 총 임금소득은 70~11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세대원의 수가 약 2.5명이어서 단독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2.5배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때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존재하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도 단독세대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때 세대 총 임금소득은 약 110~140만 원 정도이며 세대원의 수는 3~3.5명이다. 결론적으로 비단독 미혼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결코 단독세대보다 낮지 않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정 시 개개인의 최저임금이나 미혼 단독세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세대별 최저임금과 생활비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15차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충분치 못한 관측치의 수로 인해 가끔 현실적이지 못한 값을 얻기도 하였고, 더 세밀하고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약간 아쉽다. 향후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에 가구 식별 변수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더 세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KLI**